

양돈경영과 소득세

1. 소득세와 축산업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 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돈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축산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농가부업 규모의 축 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000년 1월 1일 부터 축산업이 중소기업기본 법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 업 종에 포함되게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농가부업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축산업이 전문화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제 기업농으로서의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부수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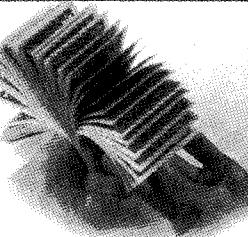
*중소기업의 범위

축산업: 상시 근로인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이하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20인과 매출액이 60억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으로 축산업이 포함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2001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감면 중 감면의 혜택이 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의 30%)은 2001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으며, 2001년 세법개정(안)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이 포함됨으로 200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

정명근
농협 축산종합개발원



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1년 세제개선(안)에서 축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됨으로 2002년부터는 축산업 소득공제가 삭제된다.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다.

$$\langle \text{산식} \rangle \text{ 사업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이월결손금}$$

3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한다.

4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

〈그림1〉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소득세법 55조1항)	=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		=	퇴직소득산출세액
산림소득과세표준	×		=	산림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세율 (소득세법 104조)	=	양도소득산출세액

〈표1〉 표준과세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01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항 삭제 됨. 다만, 2002. 1. 1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종전혜택을 받음.

5.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을 개시한 양축인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다.

6. 축산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제도 폐지와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가. 개요

축산업자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인정과세)할 수 있다.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세율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균기과세 풍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표1〉 축산업에 대한 소득표준율표

코드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기준율 (2000 적용)
	세분류	세세분류		
012101	소, 말 및 양 사육업	낙농, 육우사육	낙농품 생산을 위해 젖소, 젖양을 기르는 업. 쇠고기 생산을 위해 소를 사육하는 업	4.0(3.6)
012102		말 및 양사육	고기, 모피, 털을 생산하기 위한 말 또는 양(염소포함)을 사육	10.1
012103		사슴		14.7
012201	기타 축산업	양돈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 업(고기생산을 위한 멧돼지 사육포함)	5.2(4.9)
012202		산란계, 육계	고기 또는 알을 생산하기 위해 닭을 사육하는 업	5.2
012203		○기타가금사육 ○양봉 ○가금부화업 ○양잠 및 양잠 서비스 ○기타	○고기, 알 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각종 조류 사육업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각종 가금 및 조류를 부화하는 업 ○병아리 감별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 업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기타 목적 등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 증식, 양식하는 업	7.9

되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양돈업은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양돈장의 신축, 의약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생산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흔히 양돈업과 관련하여 공산품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2000.1.1부터 100,000원 이상의 경비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에 의하지 않을 시 증빙불비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나. 축산업에 대한 소득표준율표(2001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표2〉

다.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

계산방법

-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손비인정

- 기타비용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인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자

2)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적용대상 : 소규모사업자에 한하여 선택적용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 9천만원
- 농업, 어업, 도·소매업 등 : 1억 5천만원

〈표3〉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

업 종 구 分	수입금액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 미달자)		
	2002~3년	2004~5년	2006년 이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1억5천만원	90백만원	72백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9천만원	60백만원	48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참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7.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기준경비율 제도하에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에 필수적인 주요경비(매입경비 + 인건비 +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다만,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단순경비율 제조를 두어 현행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나. 이와 같은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표4〉 가축별 전업규모 두수 기준

가 축 별	규 모	비 고
젖 소	30 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돼 지	30 마리	
산양 면양	200 "	
토끼	300 "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닭 오리	5,000 "	
	10,000 "	

무기장사업자의 세 부담의 증가여부가 수취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근거과세확립 및 기장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제 지출비용에 따라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납세자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게 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매출자료를 노출시켜 과표 양성화에 유도

* 적용 시 주의사항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함
- 부업축산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연 1,200만원 까지 비과세
- 위에서 규정하는 축종별로 보아, 어느 한 종류의 사육가축이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함. 양돈

8. 농가부업축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